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건

질의) 공장동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답변) 소방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해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1,5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2항에 의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소방법 제6조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협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의 화재예방 행정기준에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관할소방서의 입장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4조 제2항 제5호 '~0.2미터 이상의 문 턱을 설치할 것에 관하여~'

질의) 용량이 큰 탱크 또는 수개일 경우 출입구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탱크전용실이 밀폐되어 평시관리가 곤란하므로 0.2미터 정도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이 조항은 유출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것이며 탱크가 여러 개일 경우 0.5m 이상의 간격으로 하나의 전용실에 설치하면 될 것이고, 탱크로부터의 총 유출량이 0.2m의 문턱으로도 넘쳐 흐르지 않을 수 있다면 최소값이 0.2m의 문턱이면 된다.

또한, 문턱을 높이는 이유에 출입의 불편함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즉, 문 밖으로 위험물이 유출되지 않을 정도로 문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화보협회 소방검사 법적 규정

질의) 화보협회에서 소방검사를 하게 된 법규 및 대상, 검사요원의 자격 및 현황은?

답변) 화보협회는 1972년 2월 6일 제정된 법률 제2482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다.

대상건물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조 3.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홍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공연장, 방송국, 학교, 11층 이상의 건물)

또한, 검사요원은 화보협회에 근무하는 점검 직원이다.